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

고부언*, 고철수**

목 차	
I. 서론	IV. 실증분석
II. 이론적배경 및 선행연구	V. 결론
III. 연구설계	

I. 서 론

'90년대에 들어 정부는 다양한 세원의 포착과 함께 기업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면서, 안정적인 재정수입의 확보, 과세공평성 향상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90년 말의 세법개정이 법인세율 인하와 더불어 최저한세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최저한세의 도입은 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혜택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기업의 조세부담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그 동안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제조업, 중소기업, 수출업 등 특정기업 및 특정업종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 왔다. 그 결과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수평적 공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최저한세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고(혹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세시스템 자체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반응도 고려되어야 한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많이 받은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평적 향상정도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조세감면은 증가하고 수평적 공평성은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부담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세법규정의 변화는 조세혜택을 받는 기업과 받지 못하는 기업간의 조세부담의 차이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저한세가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에 기여하였으므로 도입의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된 의도대로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켰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저한세 도입후의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다음으로 각 기업들의 조세부담의 크기에 따라 각 기업간 혹은 산업간의 공평성이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조세정책 결정자에게 최저한세제도가 의도한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해 줌으로서 향후의 조세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90년 말 최저한세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과세공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90년 말에 도입된 최저한세제도에 대한 개관을 통하여 최저한세제도의 취지 및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정 가능한 가설을 설정한다. 이러한 가설과 관련된 측정 가능한 변수를 선정 한 후 실증분석을 행하는 방법을 따른다.

최저한세제도의 도입으로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공평성 측정 지표로 변동계수를 이용하였다. 변동계수를 구하기 위한 조세부담의 측정치로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였다.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측정방법 및 자료수정의 문제로 인하여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재무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평가(주)의 재무제표자료인 KIS-FAS 2001에 수록되어 있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과세공평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

조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납세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질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그 환경의 차이점이 고려된 납세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유사한 여건에 있는 경우에 유사한 과세를 하는 것이 수평적 공평이고, 이질적 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과세차별을 행하는 것이 수직적 공평이다. 즉 수평적 공평은 과세대상의 선정이며, 수직적 공평은 세율구조의 선정과 관련이 있다¹⁾.

1) 이만우, “공평성과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공인회계사, 1993. 8., p.44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것이다²⁾. 따라서 정세이후 재분배 과정에서도 원래의 부의 순위가 인위적으로 바뀌지 않아야 한다. 환원하면 납세이전이나 납세이후나 납세자간의 상대적 위치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³⁾. 수평적 공평의 전통적 정의는 적어도 선호가 동일하다는 묵시적 가정 하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비록 소득이 동일하다고 해도 개인들의 선호가 다른 경우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도 과세후 각 그룹의 효용과 세액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므로 선호가 상이한 경우 수평적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다르더라도 과세전의 효용수준과 과세후의 효용수준이 두 집단간에 동등해지도록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즉, 과세로 인하여 효용의 정도와 순서가 바뀌어서는 아니됨을 뜻한다. 따라서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능력, 선호, 그리고 동일한 기회(opportunity set)와 동일한 사회적 한계효용(marginal social utility)에 직면해 있는 개인에게 동일한 세금의 부담을 의미한다⁴⁾. R. Nozick은 수평적 형평성의 올바른 분포는 현존하는 분포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포를 이루게 한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⁵⁾. 만일 근로소득을 가진 사람과 사업소득을 가진 사람이 같은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동일한 규모의 소득수준과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 부담이 다르다면 이는 수평적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음을 의미한다⁶⁾.

본 연구에서는 수평적 공평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최저한세가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여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2)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방법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납세자(taxpayers)들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equal treatment of equal situation)”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효용수준(utility levels)을 이용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논의하였다.

- 2) 현실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지위를 설명하기는 매우 힘들다. 동일위치는 현재소득 뿐만 아니라 미실현 자산소득, 감가상각비, 임대수입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3) 변용환, “조세공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기준”,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0., pp.34~35.
- 4) 취향이 이질적이고 다양한 개인간에 동일한 효용함수가 존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사회 내에 한 대표적인 구성원(representative agent)이 존재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이 구성원과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수평적 형평성은 검정 가능하다. 임주영, “균등회생가설에 따른 개인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6., p.164
- 5)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 Basic Books, 1974., pp.183~188
- 6) 임주영, “균등회생가설에 따른 개인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6., p.164.

즉 조세를 납부하기 이전에 동일한 효용수준을 누리야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되었다고 본다. 또 조세를 납부한 후에도 납세자들의 효용수준의 순서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를 순위보전원리(rank preservation principle)라고 한다. 효용수준을 이용하는 방법은 효용수준을 정확하게 측정에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납세자들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에 관한 고전적 정의에 충실한 방법으로 동일한 소득을 얻고 있는 납세자들의 조세부과전과 부과후의 소득을 비교하여 변하지 않았다면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되었다고 본다⁷⁾. 즉 동일한 소득수준을 갖는 두 납세자들은 동일한 세부담률을 가져야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된 것으로 본다.

세 번째 방법에서는 동일한 부담능력(equal ability-to-pay)을 갖는 납세자들(예를 들어 동일한 이익을 갖는 납세자들)을 몇 개의 집단(bands)으로 나눈 후, 각 집단내에서 조세의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예를 들어 변동계수)를 계산하여 이 값이 작을수록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특정 조세정책이 수평적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정책이 실현되기 전의 변동계수보다 정책 실현 후의 변동계수가 작으면 그 정책이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결론짓는다. 세 번째 방법은 앞의 두 가지 방법과는 달리 ‘동일한 상황’에 따라 납세자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그 집단내에서 조세의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를 계산함으로써 수평적 공평성의 측정을 쉽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납세자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집단을 나누는 기준, 즉 부담능력의 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납세자의 수평적 공평성을 연구하는 논문들을 대부분 소비수준(consumption), 부(wealth), 효용(utility) 보다는 포괄이익(expanded income)⁸⁾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상태를 구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평성과 관련된 최근의 조세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이다.

3)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지표

공평성의 향상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에 해당하는 측정도구를 정의하여야 한다. 공평성의 척도로서는 일반적으로 변동계수,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 B-S지수 등이 있다⁹⁾.

Gini계수, Atkinson지수, 그리고 B-S지수 등은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주로

7) 동일한 부담능력을 갖는 납세자들이란 조세가 부과되기 전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담능력이 동일한 기업을 말한다.

8) 포괄이익은 경제적 이익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총 조정이익(adjusted gross income, AGI)를 수정한 이익이다.

9) 장호영, “최저한세제도의 과세공평성 향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94., p.44.

재정학과 경제학에서 소득분배와 관련된 실증분석도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들 지수는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특정조세제도의 공평성 분석에 이용되기도 한다. Gini계수와 B-S지수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포괄하는 공평성 척도이며 Atkinson지수는 주로 수직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변동계수는 대표적인 공평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Anderson(1985), Pierce(1989), 현진권·나성린(1994), 장호영(1993), 전규안(1997)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변동계수를 사용하여 공평성을 측정하였다.

소득의 분포가 평균치 부근에서 높은 밀도를 보이게 되는 경우 분포상태가 비교적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그 분포가 중간부분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소득수준에서부터 아주 높은 소득수준에 이르기까지 넓게 흩어져 있다면 매우 불평등한 분포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득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치로 표준편차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각 관찰치의 크기(규모)와 관계없이 관찰치와 평균과의 편차의 크기만을 고려하여 절대치 크기로 표시하기 때문에 측정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규모가 서로 다른 집단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적당하지 않다. 이와는 달리 변동계수(coefficient variation)는 다음의 공식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표준편차(SD)를 평균치(M)로 나눔으로써 이러한 결점을 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성의 척도로 더욱 타당한 도구가 될 수 있다.

$$CV = \frac{SD}{M}$$

이와 같이 변동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이기 때문에 측정단위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scale free) 다른 수준의 소득이나 세금을 나타내는 집단 상호간 혹은 같은 집단내의 회사들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여 준다¹⁰⁾.

이 변동계수가 작을수록 그 집단의 조세부담은 수평적 공평성 관점에서 볼 때 공평한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최저한세제도는 미국과 우리 나라에서만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최저한세는 196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도입의 주된 이유는 공평성의 향상이었다. 그러나 1969년의 최저한세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76, 1978, 1982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이들 개정시의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 조세

10) 서성욱, "최저한세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7., p.43.

감면제도로 인한 불공평성(inequity)과 특정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incentives)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최저한세 도입 이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공평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Arlinghaus, Madeo and Madeo, Anderson, Bazley & Tripp 등을 들 수 있다.

Arlinghaus(1978)는 가상의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납세자들을 감면항목이 없는 경우, 감면을 받되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저한세하에서 감면을 받은 경우 등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공평성 척도로 평균편차(Average Deviatio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평균(Average), 범위(Range)를 이용해 1976년 전·후를 비교연도로 최저한세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 공평성 향상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평성 척도의 값이 감소함으로써 최저한세 도입으로 공평성이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Madeo & Madeo(1981)는 1976년의 실제소득세자료를 이용하여 TRA76과 RA78을 비교·분석하여 각 규정이 수평적 공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들은 먼저 납세자들을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¹¹⁾을 기준으로 6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런 후 다시 각 집단을 모든 납세자들을 범주 1로, 최저한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하게 될 납세자들을 범주 2~5로 구분하여 각 집단 내에서 범주 1과 범주 2~5의 평균납부세액을 구하였다. 집단 1의 평균납부세액이 다른 집단 보다 크면 최저한세로 인해 공평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최저한세가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키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TRA76 규정에 의할 경우 법정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TRA76 보다 더 많은 최저한세를 납부하게 되며, TRA76하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법정세액을 납부한 납세자들은 TRA78하에서는 아주 적은 최저한세를 납부하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derson(1985)은 TRA76, RA78, TEFRA82 규정을 적용하여 최저한세 적용의 경우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여, 어느 세법규정이 공평성을 향상시키는가를 분석한 결과 TRA76 규정이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는 분석을 위해서 1978년 소득자료를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28개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 각 그룹에 대해 TRA76, TA78, TEFRA82 각각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납부세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정상세액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하여 계산된 납부세액과 정상세액을 기초로 세 가지 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그룹별 변동계수를 계산한 다음 이 변동계수의 평균증감율 및 증감율의 순위로 공평성 향상여부를 분석하였다.

최저한세 적용이후 납부세액에 대한 변동계수가 도입전의 정상세액에 대한 변동계수보다 작으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

11) 조정소득은 우리 나라 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TRA76 규정이 변동계수 평균감소율 및 감소율의 크기에 따른 순위 모두에 있어서 가장 공평성이 향상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Anderson은 실제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Arlinghaus의 연구를 확장시켰으며 그룹 분류기준으로 종합소득(expended income)¹²⁾을 사용했고, 수평적 공평성의 척도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Madeo and Madeo의 연구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최저한세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TRA86이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전이익을 포함함에 따라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인식을 연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곧 채권자, 감사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TRA86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

최저한세의 공평성향상에 관한 우리 나라의 연구로 박춘래·장호영(1994)은 1991년과 1992년 각연도에 대해 160개 기업의 세무자료를 가지고 지니계수와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전반적인 공평성 향상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니계수는 최저한세 시행 후 감소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공평성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변동계수를 비교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임으로서 공평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편 전규안(1998)은 조세부담측정치로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346개 상장기업의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표본기업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따라 10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후 법인세만을 고려한 경우와 준조세를 포함한 경우로 나누어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인세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조세부담능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변동계수가 커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되지 않았으며, 준조세를 고려한 경우에는 각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도별 결과는 최저한세가 도입된 1991년 이후에 오히려 수평적 공평성이 낮아졌지만, 준조세를 포함한 경우에는 오히려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다고 제시하여 현행 조세체계가 공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성욱(1997)은 개인기업의 소득세자료를 대상으로 지니계수와 변동계수를 이용해 최저한세 적용으로 조세부담이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지니계수와 변동계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공평성이 향상됨을 나타냄으로서 박춘래, 장호영(1994)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고종권(1999)은 88~96년도의 277개 기업의 세무자료를 가지고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세법규정의 변화가 과세공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수준별 수평적

12) 종합소득(EI)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EI = \text{조정소득} + \text{조세지원항목} - \text{투자수익}$

공평성을 측정하는 결과 조세혜택의 편차가 매기간의 수평적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법변경에 따른 조세혜택의 크기는 매기간 산업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으로서 산업별 수평적 공평성도 기간별로 달라지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김지범(1999)은 89~93년도의 198개 기업의 소득세 자료를 대상으로 지니계수,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최저한세 도입으로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변동계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조정법인세의 경우에만 공평성이 향상되었을 뿐 법인세의 경우에는 공평성이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의 일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지니계수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관계없이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최저한세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최소한 최저한세 시행전의 납부세액(정상세액)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조세감면제도를 많이 적용받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조세감면제도를 많이 받아왔던 기업에 대해 감면효과를 줄여주므로 소득수준이 동일한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납부세액의 차이를 줄여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우리 나라는 오래전부터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제조기업, 수출기업, 중소기업 등에 수많은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하여 왔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수준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이 제조업·비제조업이나 혹은 중소기업·대기업이나에 따라 납부세액이 상당히 차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전에 비해 적용후에는 유의적인 공평성 향상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최저한세는 감면을 받은 후의 결정세액과 감면을 받기 전 소득에 15%를 곱한 최저한세액 중 큰 것을 법인세액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 일정수준까지만 조세감면을 허용함으로써 소득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차이는 줄어들어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 최저한세 도입연도인 1991년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된 조세부담의 기업별 수평적 공평성은 도입 전연도인 1990년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기업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종류의 업종에만 종사하는 기업은 없으므로 산업분류가 임의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의 판매비율이 한 기업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별로 분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 조세지원 또는 억제정책은 기업단위보다는 산업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비제조기업 보다는 제조기업이, 내수비중이 큰 기업보다는 수출비중이 큰 수출기업이 조세혜택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별로 조세부담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은 세운다.

가설Ⅱ : 최저한세 도입연도인 1991년의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된 조세부담의 산업별 수평적 공평성은 도입 전년도인 1990년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조세 부담을 전체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조세부담의 증가 또는 감소 규정은 기업간의 조세 부담의 차이를 가져오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기업간의 수평적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법규정의 변화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는 기업은 조세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규정의 변화로 인해 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 기업은 조세부담이 커짐으로써 조세혜택과 조세불이익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간 조세 부담에 대한 차이가 커지게 된다. 반면에 세법규정의 변화에 따른 조세혜택이 적거나 조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기업간에는 조세 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세율의 인하 효과와 세법규정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이에 따른 기업의 조세혜택(불이익)이 변화할 것이므로 기업간 조세혜택(불이익)의 절대적인 크기에 따라 수평적 공평성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조세혜택(불이익)의 절대적인 크기에 따라 수평적 공평성이 달라지는 것은 특정기간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세법규정에 따른 조세혜택의 차이가 존재하는 기간에는 언제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Ⅲ : 조세혜택(불이익)의 절대적인 크기가 큰 기업의 수평적 공평성이 조세혜택(불이익)의 절대적인 크기가 작은 기업의 수평적 공평성보다 낮다.

세법 규정이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감가상각이나 투자준비금에 대한 규정의 변화는 유형자산의 비율이 큰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증자소득공제나 지급이자에 대한 규정의 변화는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채비율이 다른 산업간에 서로 다

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에 이루어진 세법규정의 변화가 주로 이와 같은 감가상각, 투자준비금, 증자소득공제, 지급이자 및 접대비와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영향을 받는 산업의 조세부담을 달리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수평적 공평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율이 인하는 전체 산업의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나, 세법규정의 변화에 따라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산업별 조세혜택(불이익)의 크기에 따라 수평적 공평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법규정이 산업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각 산업별 수평적 공평성도 기간별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Ⅳ : 조세혜택(불이익)의 크기가 큰 산업내의 수평적 공평성이 조세혜택(불이익)의 크기가 작은 산업내의 수평적 공평성보다 낮다.

2. 수평적 공평성 분석 방법

공평성의 향상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에 대한 측정도구를 정의하여야 한다. 공평성의 척도로서는 일반적으로 변동계수가 널리 이용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공평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소득의 분포가 평균치 부근에서 높은 밀도를 보이게 되는 경우 분포상태가 비교적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그 분포가 아주 낮은 소득수준에서 아주 높은 소득수준에 이르기까지 넓게 흩어져 있다면 매우 불평등한 분배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소득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치로 표준편차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표준편차는 각 관찰치의 크기와 관계없이 각 관찰치와 평균과의 편차의 크기만을 고려하여 절대치 크기로 표시하기 때문에 측정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규모가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할 때는 적당하지 않다.

이와는 달리 변동계수는 다음의 식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표준편차(SD)를 평균치(M)로 나눔으로서 이러한 결점을 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성의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다.

$$CV = \frac{SD}{M}$$

수평적 공평성의 척도로 변동계수를 사용할 경우 표본기업들을 동일한 상태에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수평적 공평성의 개념이 동일한 소득을 가진 구성원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집단을 구성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상태에 있는 집단이란 소득상태에 있는 집단을 말하는데

이때의 소득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집단분류기준은 수평적 공평성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세금납부능력을 반영하는 척도이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법인세 세액계산구조상 나타나는 소득금액은 공표소득¹³⁾, 각 사업년도소득, 과세표준 세 가지이다. 이 중 앞서 언급한 세금을 납부할 능력에 가장 근접한 소득개념은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분류기준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사용하여 10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산업별 분류기준으로는 KIS-FAS 2001 자료를 이용하여 14개의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1) 변동계수를 이용한 공평성 분석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변동계수에 의한 공평성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행하였다.

① 분석대상기업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따라 10개 집단으로 나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분류기준으로 공표소득 즉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초로 변동계수를 계산하여 공평성향상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 분석대상 연도도 89~92년도 4년으로 하였는바 각 연도별로 분석대상기업을 10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도 10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업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공평성의 척도로 변동계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변동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소득수준의 기업들을 한 집단으로 묶어야 한다. 만약 집단수가 너무 많으면 집단내의 표본기업수가 너무 작아 변동계수 계산시 표본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반대로 집단수가 적으면 최저한세 적용 전후의 변동계수 증감분석을 위한 관찰치(한 집단마다 하나씩 계산됨)가 너무 작아서 변동계수에 대한 유의성분석이 불가능하게 된다. 집단을 몇 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 기업수와 유의성 분석방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와 비교할 목적으로 10개의 집단으로 하였다.

② 각 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에 대해서 연도별, 집단별로 아래의 식에 의하여 유효세율을 계산한다.

$$ETR = \frac{CTE}{PTI}$$

③ ②에서 계산된 유효세율을 기초로 각각의 경우 변동계수를 다음의 식에 따라 계

13) 국세청 자료분류에 의하면 일반적인 기업회계상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의미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공표소득에 손금산입·불산입, 익금산입·불산입 등의 세무조정금액을 의미한다.

산한다.

$$CV_i = \frac{SD_i}{T_i} \times 100$$

- CV : i 집단에 대한 변동계수
- SD_i : i 집단의 유효세율의 표준편차
- T_i : i 집단의 유효세율의 평균값

이렇게 하여 계산된 변동계수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공평성 향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변동계수(CV)는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로 이 CV가 작을수록 수평적 공평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CV는 조세부담능력이 동일하지 않은 기업을 동일한 부담능력을 갖는 기업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에 수평적 공평성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표본기업들을 유사한 조세부담능력을 갖는 기업들로 분류하기 위해 분류기준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사용하였다. 집단을 몇 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수는 10개의 집단으로 하였다.

표본기업들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준으로 10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각 집단별 수평적 공평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의 CV를 구하였다. 이 CV가 작을수록 그 집단의 수평적 공평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각 집단에 대한 수평적 공평성의 측정에 이어 각 연도별 수평적 공평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에 속한 기업의 수를 기준으로 한 가중평균변동계수(Weighted Average Coefficient of Variation : WACV)를 구하였다.

$$WACV_t = \frac{\sum_{i=1}^N (n_{i,t} \times CV_{i,t})}{\sum_{i=1}^N n_{i,t}}$$

- $WACV_t$ = t 연도 가중평균변동계수
- $n_{i,t}$ = 집단 i 의 t 연도 표본기업의 수
- $CV_{i,t}$ = 집단 i 의 t 연도 변동계수
- N = 집단의 수

위 식에 의하여 계산된 $WACV_t$ 가 작을수록 특정 연도의 수평적 공평성의 정도가 다른 연도에 비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3. 변수의 측정

1) 유효법인세율(Effective Tax Rate : ETR)

법인세법상의 세율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인하여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유효법인세율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세법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세부담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분모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분자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등을 사용하여 유효법인세율(ETR)을 계산하였다.

$$ETR_{i,t} = \frac{CTE_{i,t}}{PTI_{i,t}}$$

- $ETR_{i,t}$ = 기업 i 의 t 년도 유효법인세율
- $CTE_{i,t}$ = 기업 i 의 t 년도 법인세비용
- $PTI_{i,t}$ = 기업 i 의 t 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등의 수치는 세무조정을 통해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액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기업의 법인세 추납액과 환급액 자료가 분석상의 잡음을 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추납액과 환급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법인세 측정치를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2) 조세혜택(불이익)

조세혜택(불이익)은 고종권(1997)에서 사용되었던 정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text{조세혜택}(TP) = \text{세전순이익}(PTI) - \frac{\text{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CTE)}{\text{법인세율}(t)}$$

이와같이 정의하는 경우 조세혜택은 법인세법상의 익금과 손금 조정항목 및 비과세,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법인세율 t 는 각 연도의 법인세율로 표본이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상장법인의 연도별 세율(방위세와 주민세 포함)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표본기업 대부분의 과세표준금액의 법정 최고세율이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하여 적용연도별로 산출하였다. 88년~90년까지는 0.3975, 91년~93년까지는 0.3655 법정세율로 이용하였다.

<표 3-1> 연도별 실제 최고세율의 변화

연도 \ 세율	법인세율	방위세율	주민세율	법정세율
89 ~ 90	30 %	30% × 25% =7.5%	30% × 7.5% =2.25%	39.75%
91 ~ 92	34 %		34% × 7.5% = 2.55%	36.55%

자료 : 채종화, "법인세율의 변경과 법인세평준화 성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 연구 제11호, 1998.

4. 표본기업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2000년 12월말 KIS-FAS의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계속 상장된 기업으로서 한국신용평가(주)의 KIS-FAS자료에서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재무제표를 구할 수 있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것은 자료의 입수가능성 때문에 적용된 기준인데, 이와 같은 기준을 선택하면 계속 존속하는 기업만 표본에 포함되어 생존기업편의(survivorship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관련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가 심하며 영업환경이 다르고 일반기업과는 재무제표의 구성항목도 다를 뿐 아니라, 동일한 계정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제조기업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제조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12월 결산기업만으로 표본을 한정하는 것은 표본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은 특정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세법개정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2월말 결산법인만 표본에 포함시켰다.

<표 3-2> 산업별 표본기업 수

분류번호	산 업	표본기업수
1	음식료품	17
2	섬유, 의복	15
3	종이, 목재	6
4	화학	35
5	의약품	13
6	비금속광물제품	15
7	철강, 금속	12
8	기계	7
9	전기, 전자	18
10	운수장비	10
11	유통업	13
12	건설업	20
13	운수창고업	8
14	기타제조업	9
합 계		198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로 사용되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0이면 계산이 불가능해지며, 음(-)이면 유효법인세율이 음(-)이 되어 경제적 해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0이거나 음(-)인 기업은 제외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을 한국신용평가(주)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표 3-2>와 같다.

표본들이 각 산업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표본추출과정에서 편이(bias)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IV. 실증분석

1. 조세부담에 따른 기업별 수평적 공평성

가설 I 은 '최저한세 도입연도인 1991년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된 조세부담에 따른 기업별 수평적 공평성은 도입 전년도인 1990년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최저한세 도입 후 전반적으로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변동계수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표본기업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준으로 10개 집단분류 하였다. 표본기업을 10개 집단으로 분류한 이유는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조세부담능력을 갖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표 4-1> 조세부담에 따른 기업별 수평적 공평성의 차이분석

	89	90	91	92	집단별평균
1	63.59	34.38	46.55	65.79	52.58
2	42.22	31.66	38.53	55.99	42.10
3	43.25	45.86	34.95	40.86	41.23
4	26.47	38.61	32.18	40.33	34.40
5	35.67	56.61	43.43	29.80	41.38
6	43.03	43.08	32.30	40.11	39.63
7	24.45	35.05	37.57	27.06	31.03
8	33.50	28.48	71.15	33.59	41.68
9	31.07	36.39	31.19	49.33	36.99
10	35.75	33.47	36.46	31.33	34.26
가중평균 변동계수	37.929	38.379	40.523	41.275	39.53
T-value	-0.104	-0.396	-0.175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도별 변동계수의 수치를 보면 최저한세 시행 직전년도(1990)의 변동계수가 38.379이고 직후년도(1991)의 변동계수는 40.523으로 약간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9년과 1990년의 가중평균 변동계수는 각각 37.929와 38.37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1991년과 1992년의 변동계수도 각각 40.523과 41.27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T-test를 통한 가설 검증 결과 최저한세 시행 직전년도와 시행연도간에 $t = -0.396$ 으로 수평적 공평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설 I 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와 같은 연구 이향현(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2. 조세부담에 따른 산업별 수평적 공평성

가설 II는 '최저한세 도입연도인 1991년 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조세부담에 따른 산업별 수평적 공평성은 도입 전년도인 1990년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최저한세 도입 후 전반적으로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가설 6과 같이 변동계수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 1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4-2> 조세부담에 따른 산업별 수평적 공평성의 차이분석

산업구분	1989	1990	1991	1992	집단별평균
1	53.90	38.08	33.29	64.57	47.46
2	53.90	21.46	54.36	40.15	42.47
3	42.14	49.26	34.64	39.70	41.43
4	29.60	33.01	51.04	56.42	42.52
5	39.89	29.15	33.20	53.19	38.86
6	18.03	16.20	31.81	31.01	24.26
7	27.15	33.27	20.76	30.87	28.01
8	37.91	34.20	70.33	34.69	44.28
9	40.19	38.25	37.71	46.54	40.67
10	63.74	18.32	51.70	41.07	43.71
11	26.56	27.37	26.44	46.87	31.81
12	49.76	58.15	41.88	44.72	48.63
13	13.38	43.76	57.73	40.83	38.93
가중평균 변동계수	39.05	33.23	40.96	46.82	40.01
T-value	1.223		-1.813*	-0.834	

*p < 0.1

분석결과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과 1991년간 수평적 공평성의 변동계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의 유의수준에서 최저한세 도입전인 1990년의 변동계수의 평균값이 최저한세 도입 년도인 1991년의 변동계수의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저한세 도입전이 오히려 최저한세 도입후보다 수평적 공평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 7은 기각되었다.

3. 조세혜택의 크기에 따른 기업별 수평적 공평성

가설Ⅲ은 '조세혜택(불이익)의 절대적인 크기가 큰 기업의 수평적 공평성이 조세혜택(불이익)의 절대적인 크기가 작은 기업 기업의 수평적 공평성보다 낮다'는 것으로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에 앞서 먼저 각 연도별로 조세혜택(불이익)의 절대치를 기준으로 표본을 절대치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으로 나눈후 이를 다시 세전순이익을 가지고 10등분하여 집단을 구분한 후 각 집단의 변동계수를 계산하였다(고종권, 1999). 조세혜택과 유효세율간의 관계를 변동계수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므로 조세혜택이 없는 경우의 유효세율보다 조세혜택이 많은 경우의 유효세율이 작아지고, 반대로 조세불이익이 있는 많은 경우는 유효세율이 커진다. 따라서 조세혜택이 많거나 반대로 조세불이익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계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조세혜택의 크기를 변동계수의 절대치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또한 조세혜택(불이익)의 절대치는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기업의 총자산으로 나누었다.

수평적 공평성은 유효세율의 변동계수를 계산한 결과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연도별로 조세혜택의 크기에 따라 수평적 공평성의 차이를

<표 4-3> 조세혜택의 크기에 따른 기업별 수평적 공평성의 차이분석

기업	1989		1990		1991		1992	
	대	소	대	소	대	소	대	소
1	61.25	29.27	44.75	26.15	74.74	31.27	52.16	44.20
2	40.89	22.09	60.97	12.78	51.62	54.10	52.91	24.11
3	43.07	47.76	62.91	25.30	34.32	28.06	48.09	33.25
4	43.88	23.64	35.69	15.24	63.21	24.13	33.79	31.62
5	63.49	21.48	62.67	31.75	39.24	14.67	61.23	14.04
6	47.60	9.52	34.33	22.71	40.15	22.64	55.41	17.12
7	19.44	11.74	43.09	20.23	88.85	13.22	38.73	22.74
8	43.66	9.58	41.04	8.32	34.77	15.48	38.79	12.75
9	51.22	6.60	53.28	10.28	30.24	36.93	59.88	35.29
10	39.19	19.66	45.43	11.09	22.62	13.53	38.90	16.64
평균	45.37	20.14	48.42	18.38	47.98	25.40	47.99	25.18
T-value	5.049***		8.242***		2.888**		5.344***	

보이고 있다. 1991년의 경우 $p < 0.05$ 수준에서 나머지 연도는 $p < 0.01$ 수준에서 조세혜택이 절대치가 큰 기업이 절대치가 작은 기업에 비해 수평적 공평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저한세 시행전(1989-1990년)과 시행후(1991-1992)에 조세혜택의 절대치가 큰 기업이 작은 기업에 비해 수평적 공평성이 낮다는 고종권(1999)의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못하지만 이를 지지해 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기 전과 비교해 시행후 조세혜택의 절대치가 낮은 기업의 경우 오히려 수평적 공평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혜택의 절대치가 큰 기업의 경우도 최저한세의 도입전후와 비교해 수평적 공평성의 변화가 거의 없어 보인다.

4. 조세혜택의 크기에 따른 산업별 수평적 공평성

가설IV는 '조세혜택(불이익)의 크기가 큰 산업내의 수평적 공평성이 조세혜택(불이익)의 크기가 작은 산업내의 수평적 공평성보다 낮다'는 것으로 한국신용평가(주)의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조세혜택의 크기와 산업별 변동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4-4>의 상단부에 제시되었다.

<표 4-4> 산업별 조세혜택(불이익)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의 차이분석

산업번호	1989	1990	1991	1992	평균
1	53.90	38.08	33.29	64.57	47.46
2	38.17	21.46	54.36	40.15	38.54
3	42.14	49.26	34.64	39.70	41.43
4	29.60	33.01	51.04	56.42	42.52
5	39.89	29.15	33.20	53.19	38.86
6	18.03	16.20	31.81	31.01	24.26
7	27.15	33.27	20.76	30.87	28.01
8	37.91	34.20	70.33	34.69	44.28
9	40.19	38.25	37.71	46.54	40.67
10	63.74	18.32	51.70	41.07	43.71
11	26.56	27.37	26.44	46.87	31.81
12	49.76	58.15	41.88	44.72	48.63
13	13.38	43.76	57.73	40.83	38.93
14	48.58	11.21	28.50	62.94	37.81
평균	37.79	32.26	40.96	54.25	
가중평균	37.68	33.23	40.96	41.82	
조세혜택집단	89	90	91	92	
1(최소)	22.48	19.83	27.37	24.93	
2	20.06	14.28	23.62	28.73	
3(최대)	26.48	24.78	30.72	30.37	
F-value	0.496	2.616*	0.498	0.377	

* $p < 0.1$

집단을 산업별로 구분한 이유는 세법규정의 변화가 동일산업의 경우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고 예상되기 때문이며, 또한 산업별 조세혜택(불이익)의 크기를 조세혜택의 절대값보다 조세혜택(불이익)의 값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분석의 의미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래 값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유효세율의 변동계수가 최저한세를 도입한 이후 연도인 1991년을 기점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각 산업의 표본수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가중평균 변동계수를 구한 값도 변동계수의 평균값과 비교해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처럼 1991년을 기점으로 변동계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인해 조세혜택의 크기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조세혜택의 크기를 최소, 최대, 그리고 중간 3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조세혜택(불이익)의 크기와 수평적 공평성간의 차이분석 결과 연도에 관계없이 대체로 조세혜택이 큰 집단이 변동계수가 크고 이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1990년의 측정치에서만 1%의 유의수준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90년의 측정치에서 조세혜택이 최대인 집단이 최소인 집단에 비해 변동계수가 높게 나타나 수평적 공평성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Ⅳ는 1990년의 경우에만 지지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1991년 우리 정부는 다양한 세원포착을 통해 안정적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더불어 기업의 조세부담을 덜어준은 물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세율인하와 함께 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최저한세제도가 도입 된지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의 분분하고 아직까지 그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저한세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세무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졌다.

본 연구는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된 의도대로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켰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한세 도입후의 조세혜택 절대적 크기가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에 기여하였는지, 조세부담의 크기에 따라 각 기업간·산업간의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가설 및 모형의 검증을 위해 한국신용평가(주)에서 제공되는 기업 중 제조업 중 12월 결산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은 1989년부터 1992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평적 공평성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혜택이 절대치가 큰 기업이 작은 기업에 비해 수평적 공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체로 조세혜택이 크기가 큰 기업이 작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평적 공평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는 1990년의 측정치에서 집단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셋째,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입전과 비교해 조세부담에 따른 기업별·산업별 수평적 공평성이 높아진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도입 전에 비해 도입 후 수평적 공평성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저한세제도가 실제로 본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논자의 연구 방법에 따라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방법론상의 이유가 있겠지만 재무제표상의 자료와 실제 과세 자료를 이용한 경우도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재무제표상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고,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된 경우는 실제 과세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조세불공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 조세 공평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공평성의 원천을 밝혀야 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고종권, “세율인하와 세법변경에 따른 과세공평성의 분석”, 세무학연구 제14호, 1999, pp.109~138.
- 박춘래·장호영, “최저한세 제도의 과세공평성 분석”, 회계학 연구 제19호, 1994., pp.275~297.
- 변용환, “조세공정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기준”,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0., pp.34~35.
- 서성욱, “최저한세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7., p.43.
- 이만우, “공평성과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공인회계사, 1993. 8., p.44
- 이양현·김지범·김창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이 조세감면비율과 수평적공평성에 미친 영향”, 세무학연구 제14호, 1999., pp.141~175.
- 임주영, “균등회생가설에 따른 개인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6., p.164
- 장호영, “최저한세제도의 과세공평성 향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94., p.44.
- 전규안, “법인세부담의 공평성과 기업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p.11.
- 정충영·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2001
- 현진권·나성린, “우리 나라 세제의 형평성 측정”, 경제학 연구, 41-3호, 1993, pp.147~155.

2. 국외문헌

- Anderson, K.E, “A Horizontal Equity Analysis of the Minimum Tax Provision : An Empirical Study”, *The Accounting Review*(July), 1985, pp.357~371.
- Arlinghaus, B.P., “An Evaluation of the Impact of the Minimum Tax Provisions on Tax Equit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1978.
- Bazley, J.D. & J.C. Tripp, “The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 Impacts on Financial Reporting”, *Accounting Horizons* 3 (March), 1989, pp.54~62.
- Madeo, S.A. & L.A. Madoe, “Some Evidence on the Equity Effects of the Minimum Tax on Individual Taxpayers”, *National Tax Journal*(December), 1981, pp.457~463.
-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 Basic Books, 1974., pp. 183~188.